

IMO 제5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의결과

I. 일반사항

1. 회의명 :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
위원회(MEPC) 제55차 회의
2. 기간/장소 : 2006. 10. 9~10, 13(5일간) /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
3. 참석자 : 정책연구팀 두현욱 주임검사원

II. 회의 결과

1. 의제 채택

- 의제 1. 의제 채택
- 의제 2.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유기
물질 (R/G)
- 의제 3. 선박재활용 (Recycling of ships,
W/G)
- 의제 4.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W/G)
- 의제 5. 강제 규정의 개정안 심의 및 채택
(D/G)
- 의제 6. MARPOL 73/78 협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개정
- 의제 7. OPRC협약과 OPRC-HNS의정서의

이행 및 관련 회의 결의서

- 의제 8. 특별해역(SA)과 특히 민감한 해역
(PSSA)의 지정 및 보호
- 의제 9. 수용시설의 부적절성
- 의제 10. 전문위원회의 보고서
- 의제 11. 다른 기구의 작업
- 의제 12. 협약의 현황
- 의제 13. 선박에 의한 유해한 방오시스템
- 의제 14. MARPOL 73/78 및 관련 규정의 강제
시행 및 이행의 증진
- 의제 15. UNCED 및 WSSD의 후속조치
- 의제 16. 기술협력 계획
- 의제 17. 인적요소의 역할
- 의제 18. 공식안전평가(FSA)
- 의제 19.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작업 계획
- 의제 20. 위원회 지침서의 적용
- 의제 21.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제 22. 기타 사항
- 의제 23. 위원회 보고서 심의

2. 밸러스트수에 포함된 유해 수중유해질 관리 (의제2)

- 의제 개요
 - 2004. 2. 채택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 의 후속작업으로 전문위원회가 개발한 관련 지침(guidelines)을 검토하였음.
-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에 대해 IMO 기본 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스웨덴이 신청한 기본승인 신청을 심의하였음.
- 협약의 시행연도(현재는 2009년)를 재검토 하기 위해 각국이 제출한 밸러스트수 처리 기술 개발현황을 논의하였음.
- 협약 지침서 검토 및 채택
 - 협약 지침서 관련 6개 문서 중 다음 5건을 채택하였음.
 - MEPC 55/2/7 침전물 관리 지침서(G12)
 - MEPC 55/2/8 밸러스트수 교환 지침서 (G11)
 - MEPC 55/2/9 지정해역 설정 지침서(G14)
 - MEPC 55/2/10 침전물 수용시설 지침서 (G1)
 - MEPC 55/2/11 밸러스트수 수용시설 지침서(G5)
 - 지침서 관련 6개 문서 중 다음 1건은 BLG 11차 회의에서 재검토하여
 - MEPC 56차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음.
 - MEPC 55/2/12 추가조치 지침서(G13)
 - 브라질이 제출한 다음 문서는 BLG 11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 MEPC 55/2/19 브라질 : 비상사태 대응 지침
- 활성물질 기본승인 및 해양과학전문가그룹 (GESAMP-BWWG) 보고서 승인
 - 다음 활성물질 기본승인 신청과 GESAMP-BWWG 2차 회의 심의결과를 의장(Mr. Perterson)이 설명하였음.
 - MEPC 55/2 일본 : 활성물질 기본승인 신청(Special Pipe)
 - MEPC 55/2/3 한국 : 활성물질 기본승인 신청(NKO3)
 - MEPC 55/2/4 스웨덴 : 활성물질 기본승인 신청(EctoSys)
 - MEPC 55/2/16 GESAMP-BWWG 심의 결과 보고서
 - GESAMP-BWWG 보고서의 권고대로 일본의 기술(Special Pipe)과 스웨덴의 기술(EctoSys)에 대해서 활성물질 기본승인을 하였음.
 - GESAMP-BWWG 보고서의 권고대로 우리나라의 기술(NKO3)에 대해서는 기본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위원회는 한국에게 추후 추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다음 GESAMP-BWWG 회의 시에 추가 심의 비용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주기로 하였음.
 - 다만, 추후에는 추가심의를 하더라도 신규 신청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 하였음.
 - 미국, 일본, EC가 제시한 활성물질 승인 절차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 GESAMP-BWWG의 답변을 승인하였음.
 - MEPC 55/2/1 미국 : GESAMP-BWWG 1차보고서 의견서
 - MEPC 55/2/2 일본 : GESAMP-BWWG 1차보고서 의견서
 - MEPC 55/2/6 EC : GESAMP-BWWG 1차보고서 의견서
 - 상기 외의 GESAMP-BWWG 심의결과 보

- 고(MEPC 55/2/16)내용을 승인하였음.
- 다음 의제에 대하여는 BLG 11에 검토를 위임하였음.
 - MEPC 55/2/20 브라질 : 형식승인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 MEPC 55/2/14 인도 : 밸러스트수 보고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개정
 - MEPC 55/2/28 ICS : Res. A. 868(20)에 따른 표준 밸러스트수 보고 양식 사용을 제의
 - 아국이 제출한 협약 개정안(MEPC 55/2/24, 추가검사 부분 개정)
 - 추후 협약 발효를 전후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무국이 회람하고 채택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음.
 - 활성물질 심사 지연에 대해 GESAMP-BWWG 심사 증가요청 제안
 - 일본이 GESAMP-BWWG의 심사횟수를 늘려줄 것을 제안(MEPC 55/2/25)하여 심사횟수 1회 더 추가하여 총 2회 개최하기로 하였음
 - 제3차 심사 : 2006.11.17까지 신청서 제출, 2007. 1월 개최예정
 - 제4차 심사 : 2006.12.15까지 신청서 제출, 2007. 2월 개최예정
 - 라디칼의 활성물질 포함 여부
 - 라디칼을 활성물질에서 제외하자는 노르웨이의 제안(MEPC 55/2/29)에 대하여는 산적액체가스전문위원회(BLG 11)에 검토하기로 하였음
 - 검토반(Reviewing Group) 구성 및 검토
 - 밸러스트 관리 협약의 첫 적용일인 2009년부터 실제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반 회의를 구성(의장 : Brian Elliott, 간사 : Dandu Pughiuc)하여 다음 내용을 검토기로 하였음
 - 다음과 같이 각국이 제출한 기술 개발현황 검토
 - MEPC 55/2/13 인도 / 기술 1건
 - MEPC 55/2/15 일본 / 기술 4건
 - MEPC 55/2/17 독일 / 기술 4건
 - MEPC 55/2/18 영국 / 기술 1건
 - MEPC 55/2/21 한국 / 기술 2건
 - MEPC 55/INF.3 노르웨이 / 기술 3건
 - 2009년부터 5000m³ 이하의 밸러스트수를 가지는 선박에의 첫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토
 - 기술 개발 상황으로 보아 첫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Option)을 검토
 - 검토반(Reviewing Group) 논의 경과 및 내용
 - 각국별로 자국이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주)테크로스와 (주)NK가 각각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음.
 - 기술의 안전성(Safety) 논의시, (주)NK가 오존과 보로메이트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하였음.
 - 각국 기술 논의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일본 등이 자국의 육상시험 내용을 설명하였고, 우리나라의 (주)테크로스도 바지선에서 시행중인 육상시험을 설명하였음.
 - 기술개발 일정 논의시, 노르웨이는 2007년 10월까지 형식승인을 마칠 수 있다고 하였고, 독일은 형식승인 시험을 시작했다고 했

- 으며, 우리나라의 (주)테크로스도 2007년 말까지 활성물질에 대한 형식승인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 각국의 기술보고 문서를 종합하여 비교표를 만들었으며, 각국은 이미 제출된 단답형 질의서에 추가하여 서술형 설명서(처리장치의 작동원리 및 제원 등)를 제출하였음.
 - 활성물질의 기본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승인 일정표”를 만들었음
 - ※ MEPC 56차(2007.7.)에도 최종승인 가능
 - 밸러스트수 처리설비 개발시기 및 협약 이행시기 검토
 - 선박에 언제부터 밸러스트수 처리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5000m³ 이하의 밸러스트수를 가지는 선박에 필요한 처리설비가 빠르면 2007년 7월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협약을 2009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probably possible) 판단하였음.
 - 2009년에 협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의 장애요인(uncertainty)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 형식승인 지연에 대해 다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 : 시험 설비의 발굴 및 활용
 - : 처리장치 설치 대상 선박의 척수 파악
 - : 처리장치 미개발을 이유로 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서는 개발정보 제공
 - 형식승인시험 기술 미비에 대해 다음 해결 방안 제시하였음
 - : 협약서 D-2 성능기준 만족을 위한 생물 시험 기법 개발
 - : 시험수 확보방안 모색
 - : 형식승인 지침서 G8의 요구에 대한 샘플링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 : 형식승인 지침서 G8의 요구에 대한 샘플링 지침 개발
 - : 생물사멸 판단기준 및 탁도 기준 개발
 - : 활성물질 승인방법 미흡(활성물질의 정의,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배출시나리오, 최종승인 절차, 최종승인 절차 등)
 - : GESAMP-BWWG 업무 과다 해소
 - 상기 장애요인에 대한 각국 정부와 IMO의 업무 내용 도출하였고, 각국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육상시험 설비 자료를 MEPC 56에 제출
 - 시험 설비 활용 가능 일정을 BLG 11에 제출
 - 생물시험 기법을 MEPC 56에 제출
 - 시험수 자료를 MEPC 56에 제출
 - 샘플링 및 모니터링 자료를 MEPC 56에 제출
 - 샘플링 기준을 BLG 11과 MEPC 56에 제출
 - 생물효과 및 탁도 자료를 MEPC 56에 제출
 - 최종승인 절차 방안을 BLG 11에 제출
 - 2009년에 협약 시행 불가시 대응 방안
 -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Option)이 제시되었고, 두 가지 방안 모두 IMO의 법무담당과(Legal Office)의 심의 후 BLG 11에서 검토하여 차기 MEPC 56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 : 방안 1 : 협약 개정
 - : 방안 2 : 면제 조항 제정

○ 상기 검토반의 논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MEPC 55)의 승인

- 검토반의 회의결과(Working Paper 4)를 승인하였음

※ 우리나라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발표회 개최

- 우리나라의 밸러스트수 처리기술 발표회를 회의장소 강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주)NK의 NKO3 기술 발표회 : 10. 9.(월) 13:15~1:40

· 주)테크로스의 육상시험 결과 발표회 : 10. 12.(목) 12:45~1:30

3. 선박재활용 (의제3)

○ 의제개요

- 선박의 재활용중 사고를 예방(인명 안전 확보)하고 재활용시 선박의 유해물질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협약초안”과 “유해물질목록 작성 지침”, 기타 제출된 의제를 검토

○ MEPC 54차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의 작업보고(MEPC55/3/2)에 이어 다음과 같은 회원국의 주요의견이 있었음

- 현 초안에는 적용대상선박을 MARPOL 협약에 맞추어 400톤으로 하였으나 러시아가 SOLAS 협약에 맞추기 위해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수의 회원국들이 러시아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위원회는 작업반이 협약초안 개발시 동 제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 프랑스(MEPC55/3/4)는 협약 관련 기준들

은 별도의 강제규정(Code)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다수의 회원국이 임의규정(Guideline)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임의규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

○ 작업반 구성

- 다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의장 Mr. J. Koefoed, 노르웨이)하였음

〈작업반 작업지시사항〉

· MEPC 54차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이 개발한 선박재활용협약 초안(MEPC 55/3/2) 수정

· 선박재활용시설을 위한 지침서 개발

· 유해물질목록개발을 위한 지침서 초안 개발

· 2007년도에 제3차 ILO/IMO/BC 공동작업반회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 2008년 또는 2009년도에 협약 채택을 위해 통신작업반의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작업지시사항을 작성

· 2008년 또는 2009년도에 협약 채택을 위해 MEPC 56(2007. 7)이전에 중간작업반회의 필요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시기·장소 및 작업지시사항 작성

○ 작업반 논의사항

- 협약의 용어 정의(제2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로 인해 이번에 구성되는 차기 통신작업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제3조)에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업무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협약적용 대상에서 국내항해 선박을 제외토록 제안하였고, 다수국은 협약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미국은 차기 중간 작업반회의 전까지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여 제출기로 하였음
- 동 협약의 기국준수 감사제도(제13조)를 협약에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다수 참가국이 반대하였고, 동 제도 활용방안을 계속 논의기로 하였음.
 - 신조선 적용일이 협약발효 이후 인도일 기준으로 [30]또는 [12]개월이 초안(Reg A-1-5)에 제시되었으나 일본·그리스는 선박 건조계약은 건조년도 보다 4~5년 전에 이루어지므로 30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하여 통신작업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음.
 - 선박재활용시설의 요건과 관련된 지침서(SECTION C)에 대해 ILO는 자체 개발한 지침서를 참조하여 개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IMO 작업반은 반대하였음.
 - 현존선의 유해물질목록 작성(Reg-B-4)과 관련, 회원국 대부분이 신조선 요구조건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향후 계속 논의기로 함
 - 협약초안에 대한 문구 수정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시간부족으로 인해 보고요건(SECTION D) 및 부속서는 논의되지 못했음
 - 일본은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차기 중간작업반회의 전에 제출하기로 함
 - 통신작업반 구성(의장 : Mr. Sveinung Oftedal, 노르웨이) 및 작업지시사항(TOR)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 협약초안 개발
 - 협약초안 이행에 필요한 지침서초안 개발
 - 중간작업반회의에 보고서 제출
 - 중간작업반회의 개최(영국, 런던) 및 작업내용(TOR)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음
 - 협약초안 개발
 - 협약초안 이행에 필요한 지침서초안 개발
 - MEPC 56(2007. 7)에 보고서 제출
 - 터어키는 선박재활용협약초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약초안을 선박재활용시설에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MEPC 56(2007. 7)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여 동 제안을 수용하였음
- 작업반 논의사항 승인
- 작업반의 논의결과 보고서(Working Paper)를 승인하였음

4. 대기오염방지 (의제4)

- 의제 개요
- 선박으로부터 CO₂ 배출지수 설정을 위하여 “CO₂ 배출지수 잠정 지침서”에 따라 IMO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여 제출한 선박의 CO₂ 배출량을 검토하여 MEPC 58에서 동 잠정치침서를 개정예정
 - 기 채택된 “선박 배기가스 황산화물세정장치 승인기준 지침서”에 동 장치의 배출수 기준을 추가(개정)하는 것을 검토
 - 항만에서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시설의 표준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
- 회의 결과
- 항만에서 선박에 육상전력 공급시설의 표준화 관련하여 협약(MARPOL ANNEX VI)에

강제규정으로 삽입하자는 제안(스웨덴)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여 금번 회기 작업반에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 선박에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도입을 제안한 영국의 문서(MEPC./INF.7)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차기 회기에 영국으로 하여금 추가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
-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작업반의 논의 결과(Working Group)를 승인하였음.

○ 작업반 논의결과

- 황산화물세정시스템 배출수의 배출기준 검토
 - 황산화물 세정수 배출기준안이 적합한지 여부와 항만국통제의 적용 기준(IMO Criteria /Local Criteria)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기술적 고려사항이 복잡하고 시간제약 때문에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MEPC 56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황산화물세정시스템용 황산화물배출통제 지역(SECA) 적합증서 표준서식을 승인하였음.
- 결의서 A.963(23)에 따른 지구온난화가스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관련,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공기구(ICAO) 및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구체적인 기술협력 추진을 동의하였음.
- “선박 CO₂ 배출 인덱싱 잠정지침서”에 따라 우리나라, 노르웨이, 인디아, 일본 등이 제출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자료를 검토하였고, MEPC 58차까지 각국에 이산화탄

소 배출량 조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기로 하였음.

- 사무국의 “선박으로부터 지구온난화가스(GHG) 배출 연구(제2차)” 관련 업무범위 갱신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논의하도록 연기하였음.
- 세계선박정보시스템(GISIS)에 GHG 모듈의 추가는 선박으로부터 CO₂ 배출지수 설정을 위하여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임. 입력정보 항목의 미완결, 정보의 유효성 및 자료에 접근성에 대해 시간제약 때문에 결론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5. 강제 규정의 개정안 심의 및 채택 (의제 5)

- 다음 협약개정안을 검토하고 초안작업반(D/G)에게 최종 문구수정을 지시하였으며 채택하였음.
 - MARPOL Annex I 개정(남아프리카 남부해역의 특별해역 추가 지정. 2008. 3. 1 발효예정)
 - CAS 개정 (CAS 검사시 유효한 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탱커선의 국적, 선주 및 검사기관 등을 변경할 경우의 절차를 추가, 2008. 3. 1. 발효예정)
 - MARPOL Annex III 개정(포장된 형태로 된 유해물질의 상세 구분, 2010. 1. 1 발효 예정)
 - Annex III, 제8규칙 1항 추가 개정(모든 MARPOL 부속서의 “운항상 항만국 통제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육상터미널을 항만국 통제대상에 포함)

6. MARPOL 73/78 협약 및 관련 규정의 해석과 개정(의제 6)

- 부속서 1의 개정과 관련된 다음 문서를 검토하고 DE 전문위원회에서 2 회기 동안 추가 검토하도록 위임하였음.
 - MEPC 55/6/1(Denmark) : 슬러지탱크와 발지수저장탱크 정의, IOPP 증서 추록의 개정, 기름기록부의 기록 방법 통일해석, 발지 및 슬러지 처리시스템의 승인지침서 개정, 선박기관구역의 유성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침서(MEPC/Circ.511) 개정
 - 위 개정 관련 의견 문서 : MEPC 55/6/6(BIMCO), MEPC 55/6/10 (India), MEPC 55/6/11(Sweden), MEPC 55/6/12 (INTERTANKO)
- 전자식기름배출감시시스템(EODMS)의 도입
 - 선박으로부터 기름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전자식기름배출감시시스템(EODMS)을 도입하고, 동 EODMS를 선박장거리식별추적시스템(LRIT)과 통합할 것을 제안한 도미니카에게 협약개정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새로운 작업계획으로 검토하기 위해 MEPC 56차 회의에 다시 제출하도록 결정하였음.
- 부속서 5의 개정과 관련된 다음 문서를 검토하고, 논란 끝에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음.
 - MEPC 55/6/3(Norway) : 건화물 잔류물의 배출요건의 신설
 - MEPC 55/6/4(New Zealand) : 포스핀가스 와 마그네슘 훈증제의 제품 포장제 처분에 대한 MARPOL Annex V 적용
 - MEPC 55/6/7(BIMCO) : 특별해역 내에서 건화물의 화물잔류물을 함유하는 화물창세 정수의 처분을 명료화한 MARPOL Annex V 이행에 대한 지침서의 개정
- MARPOL 부속서 I, 제38.2.5규칙 개정을 승인
 - 항만의 수용시설이 일반 기관구역의 유성잔류물뿐만 아니라 유탱커의 화물잔류물도 수용하도록 MARPOL 부속서 I, 제38.2.5규칙 내용에 34규칙(유탱커 화물 잔유물 수용)의 추가를 승인하였으며, 사무국에게 2007년 1월 1일 전에 회보를 발행하도록 결정하였음(MEPC 55/6/2).
- IACS의 MARPOL Annex I, 제37.4규칙의 검사 적용 해석을 승인
 - IACS가 제안(MEPC 55/6/5)한 MARPOL Annex I의 제37.4규칙(SOPEP, 재회중량 5,000 톤 이상의 모든 유탱커는 전산화된 육상기반 손상복원설 및 잔류구조강도 계산 프로그램의 신속한 접근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시 적용하도록 승인하였음(회사를 서비스제공자로 개정하여 승인)
 - 육상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와 선박의 계약서를 선내에 보관여부
 - 컴퓨터계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육상기반 회사의 진출서 입수
 - 선장이 어떠한 때라도 육상의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접근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
- 부속서 IV의 분뇨배출관 및 육상표준연결구 설치에 관한 통일 해석 승인

- Annex IV를 적용받는 모든 선박의 분뇨배출관 및 육상표준연결구 설치의 강제 여부가 애매하였으나 IACS가 강제 설치하자고 제안(MEPC 55/6/8)한 통일해석을 승인하였음.
- 호주가 제안(MEPC 55/6/9)한 MARPOL Annex I에서 적용되는 “도중에”에 대한 정의는 추후 IMO의 적절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7. 특별해역(SA)과 특별히 민감한 해역(PSSA)의 지정 및 보호(의제 8)

- PSSA 지정 신청의 평가·분석시 사용될 검토서식(신설) 승인
 - 미국이 제안(MEPC 55/8)한 PSSA 지정 신청의 평가·분석시 사용될 검토서식(Review form)에 대하여 아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본 검토서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승인되었고, 검토서식의 4.1~4.4 항목에 "DATE" 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음.
- 남아프리카 남부 해역의 특별해역(SA) 지정의 조기이행을 위한 회람 발행
 - 남아프리카 남부 해역의 특별해역(SA) 지정이 2008. 2. 1에 발효되나, 당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의 화물탱크세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적용 및 이행을 위해 MEPC 회람문서를 발행하기로 하였음
- 항해안전전문위원회(NAV 52)에서 논의된 아래의 갈라파고스 PSSA의 관련보호조치(APMs)를 승인하였음.
 - 갈라파고스 특별민감해역에서의 새로운 강

- 제적인 선박 보고 제도
 - 갈라파고스 군도에 선박 입항시 두개의 강제 통항 분리 설계들을 이행
- 호주의 토레스해협 강제도선 시행에 대한 이의 제기
 - 호주의 Marine Notice 8/2006(Torres Strait에서의 강제도선)에 대해 ICS 등이 이의를 제기(MEPC 55/8/3)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으나 의장이 MEPC. 133(53)에서 규정한 도선이 권고사항임을 직권으로 발표하여 호주가 수용하였음. 그러나 싱가포르가 호주에게 자국법의 재개정 요청하였으나 호주는 수용하지 않았음

8. 전문위원회 보고서(의제 10)

- BLG 10차 회의결과 보고
 - 회보 발행 승인
 - BLG/Circ.17 : 산적액체화물의 선적서류에 사용되는 화물명의 정확한 사용에 관한 BLG/Circ.17 발행을 승인하였음.
 - BLG/Circ.18 : MARPOL Annex II 및 IBC Code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선택적 선적서류의 견본에 관한 BLG/Circ.18 발행을 승인하였음.
 - BLG/Circ.19 : 개정 IBC Code 2004 채택 이후 평가되거나 재평가된 제품에 관한 BLG/Circ. 19 발행을 승인함.
- MEPC 56차에서 채택할 각종 밸러스트수관리지침서 초안을 승인하였음.
 - 선박에서의 침전물 관리를 위한 지침서(G12)
 - 밸러스트수 교환 디자인 및 설비기준 지침

- 서(G11)
- 밸리스투스 교환을 위한 지정해역 설정 지침서(G14)
- 1973 INTERVENTION PROTOCOL 개정 초안 승인
- 1973 INTERVENTION PROTOCOL의 적용을 받는 물질의 기준을 개정된 MARPOL 73/78 Annex II에 따라 개정된 1973 INTERVENTION PROTOCOL을 MEPC 56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승인하였음.
- MARPOL Annex IV 관련 승인
- 분뇨처리장치의 배출기준 및 성능시험 이행에 관한 개정 지침서(Res. MEPC.2(VI))를 MEPC 결의서로 채택키로 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 대장균 250마리/100ml을 100마리/100ml로 수정함.
- 5일 동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을 50mg/l에서 25mg/l로 수정함.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25mg/l)을 새로운 파라미터로 추가
- 오수처리장치 최소부하상태에서의 작동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형식검사 사이클을 개정함(개정된 Res. MEPC.2(VI) 그림 1)
- 오수처리장치에 제조자 또는 주관청의 필요에 따라 운전정보 및 제한치 등을 기기 본체에 라벨로 부착토록 함(개정된 Res. MEPC.2(VI) 5.10.1)
- 발효시기를 2010. 1. 1.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 홀딩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직접 오수를 해양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MARPOL

73/78의 부속서 4의 규칙11.1.1과 관련하여 선내오수 배출을 관련 기준을 규정한 결의서를 승인함.

(선내오수 배출율 = hourly swept volume (m³/h)/2000, swept volume = 선박의 폭 × 깊이 × 항해거리)

- 기존의 저장탱크의 분뇨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동물 구역으로부터 발생된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도 추가하여 배출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규칙 11.1.1을 승인하였으며 MEPC 56차에서 채택 예정임.

<부속서 4장 규칙11.1.1 개정 내용>

·In any case, the sewage that has been stored in holding tanks, or sewage originating from spaces containing living animals, shall not be discharged.

-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에 관한 사항
- 대기오염에 관한 회기간 작업반의 위임사항을 승인하였음.
- MARPOL Annex VI 및 NOx Technical Code의 이행과 관련된 통일해석을 승인함.

□ FSI 14차 회의결과 보고

○ Circular letter 초안 승인

- Circular letter No.1886/Rev.3 : 선박의 용골거치 이전에도 IMO 선박번호 부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회보 초안을 승인하였음.
- Circular letter No.2554 /Rev.1 : IMO Company 식별번호에 대한 등록자료 변경 절차와 관련된 송부 File 형식(XML file)

및 송부 방법 등을 명시한 회보 초안을 승인하였음.

- 차기회의에서 PSC 활동의 이행을 위한 Code 개발을 착수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하였음.
- PSC 협력체제에 관하여 Paris MOU 및 Tokyo MOU 등의 협력체제 강화사항을 승인하였음.
- 각종 밸러스트수 지침서 관련 검토사항을 승인하였음.
 - 침전물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서(G1)
 - 밸러스트수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서(G5)
 -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검사·증서조화제도(HSSC)의 임시검사 지침서 초안
 -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PSC 지침서 개발과 관련된 시행계획서
- 부적절한 항만수용시설을 해결을 위한 FSI 15에서의 추가 검토를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승인하였음.

9. 타기구의 작업(의제 11)

- MSC 81차 결과보고
- 정부대행기관 승인에 관한 지침(Res. A.739(18)의 개정(Res. MSC.208(81)) 개정안 채택을 인지함.
 - 정부대행기관의 승인에 관한 지침서인 결의서 A.739(18)을 개정하여 법정검사 및 증서발급은 “특정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만을 위하여 고용된 전담검사원과 심사원(only exclusive surveyors and auditors)”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 추가됨. 무선검

사의 경우는 Res.A.789(19) “정부대행업무기관의 검사 및 증서발급의 기능에 대한 상세”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전담 검사원(non-exclusive surveyors)에게 검사를 위임할 수도 있음.(2010. 1. 1일 채택되고 “2010년 7월 1일” 발효예정)

- IMDG 코드개정 채택(2007. 7. 1일 채택되고 2008. 1. 1 발효예정)을 인지함
 - 유엔권고의 개정과 GHS(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를 IMDG Code 제33차 개정안에 대부분 반영함
 - 인화성액체로 구분하는 기준인 인화점 61℃를 유엔권고에서 60℃로 개정됨에 따라 IMDG 코드도 개정
 - IMDG Code 7.9.3항의 주관청 연락처 최신화. 연락처 정정사항은 IMO로 송부되어야 함.
- SOLAS 1974 개정-장거리 선박식별 및 추적장치(LRIT) 탑재 (Res. MSC.202 (81), 2007. 7. 1일 채택되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을 인지함.
- SOLAS Chapter V/19-1규칙 신설을 인지함
 - 적용시기
 - 1) 2008. 12. 31일 이후 건조선은 LRIT 장비 탑재 요구됨.
 - 2)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및 A2 또는 A1, A2, A3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08. 12. 3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 까지 탑재 요구됨.
 - 3) 2008. 12. 31일 전 건조선박으로서 A1, A2, A3, A4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2009. 7. 1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무선
설비검사일 까지 탑재 요구됨. 단, 이러한
선박이 A1, A2 및 A3 해역을 운항하는
동안은 위 2)항을 만족 요함.
- 적용대상 : 여객선(고속여객선 포함), 300
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고속선 포함) 및
이동식시추선. 단 A1해역만을 운항하고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한 선박은
적용제외 함.
 - SOLAS XII2장 6규칙이 2006. 7. 1. 발효함
에 따라 길이 150미터 이상 산적화물선은 주
관청이 결정하여 2006. 7. 1일 이후부터 도
장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람
MSC.1/Circ.1198을 인지함.
 - 해양사고 관련 데이터를 회원국이 IMO에 제
공함에 있어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FSI 13
에서 요청한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인지함.
 - MSC 81차는 IBC Code의 방화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MEPC56 및 MSC 82차에서 채
택될 예정임. 방화규정의 조기시행을 촉구하
는 회람문서 MSC-MEPC.2/Circ.4을 승인함.
 - 개정된 IBC Code의 제17장, 제18장 및 제19
장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면 사무국에게 개정
된 IBC Code 통합본을 회원국에 회람시켜
MSC 82차에서 채택되어 2009. 1. 1.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 요청함을 인지함
 - MARPOL AnnexV와 런던협약(LC) 사이의
경계-LC/MEPC 통신작업반 공동 보고서
 - 2004년 제26차 LC 체약국 회의에서
MARPOL Annex V와 LC 사이의 경계와 관
련하여 MEPC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였음
 - MARPOL Annex V, LC 및 이들 협약에 의
해서 개발된 지침서가 부패된 화물(spoiled
cargoes)과의 경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MARPOL Annex V에서 해양투기에 관한
측면을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음.
 - 부패화물이 MARPOL Annex V이 정의하
고 있는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동
부속서에 의해 규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는 대부분 LC에 의해서 규제 함.
 - 해양투기에 관한 측면이 MARPOL Annex
V에서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고,
MARPOL Annex V 검토 작업반이 MEPC
56(2007. 7)에서 구성될 예정이므로 다음
과 같이 위임사항을 정하였음.
 - 화물고 소재 후 곡식 및 설탕과 같은 잔류물
의 배출
 - 해롭기는 하나 환경 오염원으로 판단되는
잔류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배출
 - 산적화물선의 유해한 그리고 비유해한 화물
잔류물의 배출 등
 - 부패화물 처리에 관한 선원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
 - 지침서의 개발은 LC의 주도하에 MEPC와
공동적으로 개발토록 권고하였음.
 - 부패화물의 대부분이 LC의 적용을 받는다
는 작업반의 견해에 주목하고, 부패화물 처
리에 관한 선원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과 관
련하여 향후작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
도록 하였음.

- GESAMP 활동에 대한 정보
- GESAMP/BWWG 1차 모임
 - 2006년 1월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 활성화물질 초기승인 2종을 검토하였음
- GESAMP/BWWG 2차 모임
 - 2006년 5월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음
 - 활성화물질 초기승인 3종을 검토하였음
- 제42차 및 제43차 GESAMP/EHS(GESAMP Working Group on the Evaluation of the Hazards of Harmful Substances carried by Ships) : 2006년 2월 및 6월에 개최되었음.
- 2006년 7월 UNIDO(United Nations Industrial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가 새로운 GESAMP 후원자로 지원하였음.
- 2006. 9. 18~20까지 소규모 GESAMP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최근 범세계적이고 지역적인 평가활동 소득에 대한 UNEP-WCME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는 UN이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절차(regular process)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제34차 GESAMP정기회의 : 파리 UNESCO-IOC 본부(2006.11.27~12.1.)개최예정임.

10. 선박에 의한 유해한 방오시스템(의제 13)

- 2001년에 채택된 AFS협약의 발효요건은 25개국 이상, 세계상선 선복량의 25%가 비준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발효되며, 비준현황은 17개국, 17.43%임.

- Croatia가 조만간에 AFS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현재 AFS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금년 말까지는 개정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AFS을 비준할 것임 발표함.

11. MARPOL 73/78 및 관련 규정의 강제 시행 및 이행의 증진(의제 14)

- 인터폴은 2002년 Project Clean Seas를 결성하여 선박으로부터 불법 오염물 배출(특히 MARPOL Annex I에 위반되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MEPC56 (2007. 7)에 제출할 예정임을 알림
- 위원회는 인터폴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불법배출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폴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였음

12. 기타 사항(의제 22)

□ 선박과 고래의 충돌

- 벨기에가 제출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선박충돌작업반에서 작성한 수많은 단기 우선 조치 및 선박 충돌로 인한 고래의 폐죽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권고안을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호와 연계하기로 한 제안에 대해서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았으며, 차기 MEPC 56차에서 권고안을 채택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2004-2005년도 사이에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부산사이에서 운항하는 초고속여객선에서 고래로 추정되는 미확인 물체와 3차례 충돌한 사고가 있었음을 알리고,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고래의 대량 사망을

줄이고자하는 IWC 활동이 결국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MO와의 활동과 일치하므로 IWC의 활동을 적극 지지함을 발표하였음.

13. 향후 대책

- 선박밸러스트수 관리 관련 법령 제정을 적기에 추진
 - 협약의 이행시기를 2009년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추진 중인 선박밸러스트수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협약 발효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 밸러스트수 기술개발 관련, 기국의 보고 이행
 - 선박밸러스트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회원국의 보고서(국가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비시험 현황 등을 IMO에 통보)을 IMO에 통보 필요
- 우리나라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IMO에 제출
 - 내년에도 우리나라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사하여 제출하고, IMO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설정작업에 적극 참여 요망
- 선박방화도료규제협약(AFS 협약)의 가입 검토 추진
 - 현재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완료 후 동 협약을 가입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의 부칙 조항 개정 검토 추진

14. 참가 소감

- 이번회의에 우리나라는 의제문서를 6건(활

성물질 기본승인 신청 관련 2건, 우리나라 기술현황 보고 관련 1건,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개정안 제출 1건, 선박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조사 자료 2)을 제출하여 우리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 개정안도 수용되어 협약 발효시에 적당한 시기에 개정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회원국에게 회람 등을 사무국이 시행키로 하였음).
- 우리나라가 신청한 활성물질의 기본승인이 자료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음회의에서 실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견이 거의 반영된 것으로 봄.
- 이번에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이행시기를 검토하는 검토반에서는 설비개발국간에서 서로 조심스런 발언으로 상대국가의 상황을 살폈음. 검토반에서 우리나라에게 일본, 독일 등과함께 선박밸러스트수 처리설비 분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었음.
- 이번회의의 주요 의제중 하나인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이행시기 재검토의 결정도 우리나라가 지지했던 2009년으로 결정됨으로써 유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협약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설비개발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은 개발된 설비가 없고 2007년 말에 개발될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볼 때 2009년이 된다고 해도 협약이 제대로 시행될 지에 대하여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고 봄.